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의안번호 : 제2846호
- 제출일자 : 2023. 9. 20.
- 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2. 제안이유

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하여 청소년 단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 위탁 내용

- 가. 위탁대상 :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- 나. 위탁기간 : 3년 (2024. 1. 1. ~ 2026. 12. 31.)

다. 위탁업무

-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
- 청소년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자립지원 등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 등

라. 수탁자 선정 : 공개모집 (재위탁)

4. 검토 의견

본 동의안은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,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취업 및 진로·직업 체험 지원,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·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붙임

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

시설명	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		
기존운영체	송석복지재단		
소재지	종로구 명륜길 90(지하 1층/ 지상 4층)		
개관일	청소년상담복지센터(2012.12.20.)/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2019.4.1.)		
인력	9명(청소년상담복지센터 6명 : 센터장 1명, 팀장 1명, 직원 4명 /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명 : 센터장 1명, 직원 2명)		
시설장	김은경		
주요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 - 지역 청소년 상담, 교육, 취업 지원사업 등 - 학교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 - 기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		
시설현황	층별	현황	면적(㎡)
	지하	기계실, 창고등	180.94
	1층	청소년상담복지센터(센터장실/ 사무공간 등)	114.14
	2층	경로당(할머니방/ 할아버지방 등)	171.72
	3층	청소년상담복지센터(상담실/ 놀이실/ 미술치료실 등)	171.72
	4층	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용공간(학습/ 교육실)	152.28
연간 운영 예산 (단위 : 천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5,000천원 (국 49,325/ 시 82,075/ 구 333,600) ○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11,500천원 (국 42,750/ 시 42,750 / 구 26,000) ※ 2023년 기준		

관 계 법 령

□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

제29조제4항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42조의2제1항(청소년복지지원기관등의 위탁운영) ①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□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“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□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6조4항(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)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써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(재위탁을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